

수시공시 안내 - 신탁계약·투자설명서 변경

- 대상 펀드 : 유리퇴직연금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변경시행일 : 2013년 3월 20일

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

- 주요 변경내용 : 환매수수료 삭제 및 관련 내용 변경, 기타 자구 정정 등
- 변경 대비표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1조(환매수수료)	<p>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p>1. 종류 CI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2. 종류 CP 수익증권 가. 90일 미만 이익금의 30%</p> <p>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제43조(신탁계약의 변경)	<p>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p>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삭제>
제49조(금전차입등의 제한)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2항제1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17조제2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신설>	이 신탁계약은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 주요 변경내용 : 환매수수료 삭제, 자구 정정 등
- 변경 대비표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2013. 1. 7 : -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 내용 반영 -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 기업공시서식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등 2013. 3. 20. : 환매수수료 삭제 및 자구 정정 등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 : 2012.11.30 기준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 : 2013.1.31 기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p>투자대상></p> <p>(1) 주식: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9조제13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합니다.</p>	<p>투자대상></p> <p>(1) 주식: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 중 법 제9조제13항제1호의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9조제13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단,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합니다.</p>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p>나. 환매</p> <p>(3) 환매수수료</p> <p>빈번한 환매는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수수료 증가 및 운용에 대한 교란 등을 야기하여 투자성과를 저하시키는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문제발생 소지 및 투기적인 단기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수수료(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 부담비율 : 모든 종류에 부과 -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 비고(부담시기) : 환매시 	<p>나. 환매</p> <p>(3) 환매수수료</p> <p>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칭</th> <th>환매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CI</td> <td>90일 미만: 이익금의 30%</td> </tr> <tr> <td>CP</td> <td>90일 미만: 이익금의 30%</td> </tr> </tbody> </table>	명칭	환매수수료	CI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P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p>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명칭</th> <th>환매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CI</td> <td>-</td> </tr> <tr> <td>CP</td> <td>-</td> </tr> </tbody> </table>	명칭	환매수수료	CI	-	CP	-
명칭	환매수수료													
CI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CP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명칭	환매수수료													
CI	-													
CP	-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p>나. 과세</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p>나. 과세</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 2012.11.30 기준	라. 운용자산규모 - 2013.1.31 기준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구 주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구 주소
[붙임] 용어풀이	-	<용어삭제> 투자회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폐쇄형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

- 주요 변경내용 : 환매수수료 삭제 등
- 변경 대비표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정보														
5. 운용전문인력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 : 2012.11.30 기준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 : 2013.1.31 기준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①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table border="1"> <thead> <tr> <th>명칭</th> <th>환매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CI</td> <td>90일 미만 : 이익금의 30%</td> </tr> <tr> <td>CP</td> <td>90일 미만 : 이익금의 30%</td> </tr> </tbody> </table>	명칭	환매수수료	CI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CP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table border="1"> <thead> <tr> <th>명칭</th> <th>환매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CI</td> <td>-</td> </tr> <tr> <td>CP</td> <td>-</td> </tr> </tbody> </table>	명칭	환매수수료	CI	-	CP	-
	명칭	환매수수료												
CI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CP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명칭	환매수수료													
CI	-													
CP	-													